

조선시대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연구

오승봉 * · 안동만 * *

* 서울대학교 대학원 생태조경학과

* *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조경학과

A Study on Conservation of the Natural Environment in Chosun-Dynasty, Korea

Oh, Seung-Bong * · Ahn, Tong-Mahn * *

*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Graduate School, Seoul Nat'l Univ.

* *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Seoul Nat'l Univ.

ABSTRACT

Conservation of the natural environment in Chosun-Dynasty, Korea, is analysed on the basis of the official records of the king's offices(朝鮮王朝實錄 Chosun-wangjo-sillok). In the popular ideologies of the dynasty, Seongleehak(性理學 philosophy of humanity and natural laws) and Pungsu(風水 geomancy), the natural environment is defined as an entity consisting of Cheon(天 heaven), San(山 mountains), Su(水 water), Geumsu(禽獸 animals) and Chomok(草木 plants).

The notion of Tacksi-Tackmul(擇時擇物 being careful to take natural resources at the right time) was one of the Cheonmyung(天命 heavenly decrees). It was believed that violation of this principle resulted in natural disasters.

Sasan(四山 four mountains surrounding Hansungbu-漢城府, the capital city, now Seoul), were strictly preserved according to goemancy practices. In areas other than the capital city, Sanlimcheontack(山林川澤 mountains, forests, rivers and ponds) were conserved for sustained production of building materials especially pinetrees for ship building, foods, firewoods, horses, and other useful natural resources.

* 이 논문은 1993년도 서울대학교 대학발전기금 선경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Various conservation policy instruments were adopted. Pruning trees was permitted only in October. Capturing fishes was allowed only after the spawning period. Protection areas were designated in Sasan, Seongjoesiplee(城底十里 surroundings of the capital city), Geumsan(禁山 protected mountains), Kangmujang(講武場 hunting and army training grounds), Sijang(柴場 firewood areas), Mokmajang(牧馬場 horse ranches) and Neungyuk(陵域 royal tombs). Activities prohibited for conservation purposes included cutting timbers, burning, building houses or tombs, dumping wastes, farming and breaking up fresh land, grazing, hunting and trespassing. Positive actions for conservation were rituals to Heaven, ennoblement of natural elements such as mountains or rivers, planting trees, Boto(補土 supplementing soil on low ridges), Josan(造山 mounding) and making ponds. Boto, Josan and making ponds were to make ideal terrains for geomancy.

Many government bodies and civil servants were engaged in the conservation activities. For example, Sanjik(山直 forest keeper) was a special position with responsibility for forest management.

I. 서론

생활양식의 변화와 환경에 대한 태도의 변화는 밀접한 관련을 보이고, 이러한 변화는 환경의 변화를 낳게 된다는 면에서 조선시대의 자연환경은 지금의 자연환경이나 서양의 자연환경과도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라는 점을 가정할 수 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조선시대 自然環境保全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관점으로서, 自然環境保全에 대한 차후의 의미의 공간성과 시간성의 연구에 기초가 되리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朝鮮王朝實錄 등 귀중한史料가 풍부한 조선시대를 대상으로 自然觀과 自然環境保全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II. 연구사

이만우(1974)는 조선시대의 林地制度에 대해서 經濟六典시대, 經國大典시대, 續大典 및 大典通編시대, 그리고 大典會通시대로 구분하여 고찰한 뒤 禁山 및 封山, 講武場, 官用柴場, 私有林, 松契公有林 등으로 그 제도를 연구하였으며, 이승녕(1985)은 조선시대의 松政에 대해서 禁山の 소나

무에 대한 관리의 내용 및 방법과 그 주체에 대한 것을 자연보호의 맥락에서 연구하였다.

손정목(1984)은 조선시대 漢城府의 城底十里를 '산림보호의 목적으로 국초부터 개발을 제한하여 耕作, 造家, 入葬, 伐木을 금했던 지역'으로 보았으며, 한동환(1992)은 조선전기의 漢陽 禁山の 범위와 그 변천에 대해서 고찰하였고, 풍수적 논리에서 한양의 地氣를 왕성하게 함으로써 왕조의 번영을 도모하고자 禁山을 설치하고, 식재나 토석의 채취를 막아 지맥을 보호하려 했다고 하였다.

윤국병(1978)은 조선시대에 고기를 잡기 위한 약물의 亂用 금지를 수질오염에 의한 공해의 방지책으로 보았으며, 산에 나무를 심은 것을 자연환경의 보호, 보전으로 보았으며, 이유직(1992)은 조선시대 조경관련 국가기관을 工曹, 山澤司, 掌苑署, 司圃署 등으로 보고 그 각각의 기능을 연구하였다.

조선시대 自然環境保全관련 연구에서는 그 대상이 주로 漢城府의 城底十里나 四山에 대한 것과 지방의 산에 대한 것이며, 그 접근 방법은 풍수적 맥락이나 국토의 산림정책이라는 측면임을 알 수 있다.

<표 1> 자연환경의 내용적 범위

구 분(시대)		자 연 환 경				
현 대		기 후	지형 지질 토양	수 문	야생동물	식 생
조 선 시 대	性 理 學	天	地		禽獸	草 木
	風 水	風	山(龍)	水		
조선시대 자연환경		天	山	水	禽獸	草 木

Ⅲ.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조선시대의 自然環境보전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우선 선행되어야 할 것은 조선시대의 자연환경을 정의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조선시대의 性理學과 風水에서 도출하고자 하였다. 먼저 性理學의 天命圖¹⁾에 나타나는 요소로서 天, 地, 禽獸, 草木과 風水의 風, 水와 風水가 山(龍)을 다루는 것인 점을 감안하여 山을 추가하여 조선시대 자연환경을 天, 山, 水, 禽獸, 草木으로 보았다. <표 1>

본 연구는 史料에 대한 문헌조사의 방법을 취하였다. 대상 사료는 朝鮮王朝實錄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經國大典, 大典會通 등의 법전, 新增東國輿地勝覽과 고지도 등 관련사료를 참조하였다. 景宗까지는 세종대왕기념사업회의 國譯本을, 그 이후는 북한에서 國譯된 이조실록을 사용하였다.

Ⅳ. 연구결과 및 고찰

Ⅳ.1 조선시대 自然觀

조선시대 自然觀은 性理學의 自然觀을 중심으로 보면, 그 첫째는 하늘에 대한 것으로 이는 전

체적인 의미의 자연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다른 하나는 동식물과 같은 개별적 대상으로서의 자연이다. 性理學의 自然觀은 災異로부터 이루어진다. 災異란 天命의 경계하는 바로서 이는 자연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산이 무너지고 물이 마르는 일과 해, 달, 별, 바람, 서리, 雷, 비, 새, 벌레, 물고기 따위의 변괴 등을 災異로 보았다.²⁾ 즉, 인간이 동식물보다 우위에 있는 존재이지만 인간이나 여타의 생물도 모두 하늘의 뜻으로부터 생성된 것이므로, 인간은 금수나 초목, 또는 천지만물을 다스리고 이용할 수 있지만 그 이용에 있어서 선악을 성찰해야 하고, 그 이용에 앞서 하늘의 命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이 天命을 따르지 않을 때 天은 災異를 통해 인간을 경계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이러한 天命에서 비롯하여 자연의 이용에 있어서도 敬이 중시되었는데, 이는 제사나 封爵, 擇時와 擇物 등으로 나타난다.

가. 祭祀와 封爵

제사는 그 대상에 따라 天, 風雲雷雨岳海濱과 名山大川, 그리고 地震이나 蝗蟲이 있으며, 이에 따라 祈雨祭, 祈雪祭, 祈清祭, 解怪祭³⁾, 황충포제와 祈報祀 등이 있다.⁴⁾ 이러한 제사는 자연을 이용의 대상만으리가 아니라 인간과 교통하는 유기

1) 天命圖는 조선시대에 걸쳐 秋巒 鄭之雲의 天命圖에서 시작되어 河西 金先生이나 退溪의 天命圖로 이어지는데, 이는 성리학자들이 성리학의 원리를 알기 쉽게 도해한 것으로, 이러한 天命圖를 설명하고 있는 天命圖說에 그 의미가 잘 나타나 있다. 太極圖가 “무극-태극-음양-오행-만물”의 흐름을 보이는 반면에 天命圖는 인간이 중앙에 위치하여 천, 지, 금수, 초목과의 관계를 보여 주고 있다.
 2) 대종/17/9/4/23조
 3) 解怪祭는 지진, 송충이 발생, 동물의 궁궐 침입, 바닷물의 색깔 변화등의 재이를 자연환경을 통한 천명의 경계하는 바로 보아 이들로 인해 하늘에 행하는 제사를 말한다.
 4) 大典會通 禮典 祭禮 條

적인 관계속에서 天이 깃들어 있는 즉, 天命의 나타남으로 파악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封爵은 제사와 더불어 고려되었는데, 松岳의 城隍은 鎮國公이라 하고, 和寧, 安邊, 完山の 城隍은 啓國伯이라 하고, 지리산, 무등산, 금성산, 계룡산, 감악, 삼각산, 백악의 여러 산과 진주의 성황은 護國伯이라 하고, 그 나머지는 호국의 신이라 하였다가⁵⁾, 백악을 진국백으로 삼고 남산을 木覓大王으로⁶⁾ 삼아 이들의 도움을 빌고자 하였다.⁷⁾

나. 擇時와 擇物

擇時는 자연의 이용에 있어서 시간적 제한으로서 전답에 불을 놓을때 산이나 들에까지 연소되어 소생하는 벌레를 죽이므로 불을 놓는 시기를 驚蟄以前으로 하였고⁸⁾, 가지나 잎이 떨어진 10월 이후에 벌목이나 가지치기를 할 수 있으며, 고기 잡이와 동물사냥 등에 있어서도 봄철에 수달이 물고기를 잡아 강변에다 제물처럼 늘어놓은 때가 지난 다음에야 산과 못을 맡아보는 관리가 고기 잡으러 가고, 늦가을에 송냥이가 짐승을 잡아 산 편에 제물처럼 벌려 놓은 때가 지난 다음에야 사냥을 하며, 비둘기가 매로 된 다음에야 새그물을 치는 등 때를 제한하는 것이었다.⁹⁾ 아울러 임금의 講武도 그 시기를 제한하려고 하였다.¹⁰⁾

擇物은 擇時와 밀접한 관련을 보이는데, 사냥하는데 있어 못(澤)을 포위하여 떼(群)로 짐승을 잡아 새끼와 일을 취하며, 뱃속의 태를 죽이며, 短命에 죽게 하며, 등우리를 뒤엎어 버리는 것을 暴殄天物이라 하여¹¹⁾ 금지하는 개체의 선택이나 이용이나 보호에 따라 구역을 설정하고 제한하는 것이다.

IV. 2 조선시대 자연환경보전

IV. 2.1 자연환경보전대상

자연환경보전대상을 천, 지, 금수, 초목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있지만, 性理學의 自然觀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되어진다. 즉, 천, 지, 금수, 초목, 인간을 모두 음양이나 理氣로 보는 존재론적인 측면이나 天命이라는 인식론적인 측면에서 인간의 위치를 위계지우는 것은 천, 지, 금수, 초목이 지금처럼 주체인 인간과 구별되는 대상으로서의 객체인 원자론적 자연환경보전대상이 아니라 인간도 그곳에 하나 되어 인식되는 어떤 것-“系”-이었다.

가. 天

天은 地나 人間, 禽獸, 草木의 象으로서 존재하며, 그 形은 이들을 통해서 구현하고 있다. 인간과 天의 관계는 象으로서 하늘에 대해서는 災異와 제사로 이해될 수 있으며, 形으로서 하늘일 때는 기후와 이용으로 이해될 수 있겠다. 形으로서의 天에 대한 것으로는 제반 기후현상을 들 수 있으며, 이는 농업의 중요성에 비추어 불 때 治水의 중요성을 동반하고 있다. 기후에 대해서는 왕의 德이 있고 없음과 관련되어져서 하늘이 조절하는 것으로 보아 기후와 관련하여 많은 제사가 이루어졌다. 즉, 기후현상이나 천체의 움직임 등에 대한 기록이 실록에 많이 발견되고 있는데, 이는 天이 인간이나 자연에 드러내는 암시나 움직임을 파악하여 그에 따라 인간이 어떤 행동을 취하게 하는 근거가 되는 것으로 그 행동은 주로 제사를 통해서 나타난다.

나. 地

天이 象이라면 地는 形으로서 自然環境保全의 직접적 대상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넓은 의미의 地는 天의 형으로서 山, 水, 禽獸, 草木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地에 대한 접근은 주로 地에 흐르는 氣와 地의 골격을 형성하는 山, 水와 地의 표피를 형성하는 禽獸, 草木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다.

(5) 태조/3/2/1/21조

(6) 태조/8/4/12/29조

(7) 태조/6/3/12/3조

(8) 태종/29/15/1/4조

(9) 정조/49/22/8/종유 조

(10) 태종/6/3/10/11조

(11) 태종/3/2/6/11조

① 도성의 산

도성의 산은 禁山, 또는 四山¹²⁾으로 불리기도 하였으며, 비슷한 개념으로 城底十里¹³⁾가 있다. 城底十里는 四山보다 범위가 넓다. 그러나 내외의 四山을 의미할 경우는 그 범위가 城底十里와 비슷하며, 특히 四山禁標圖¹⁴⁾에서는 四山禁標가 대전회통의 城底十里와 동일한 것을 볼 때 혼용되는 개념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하지만 四山이 山만을 의미하는데 반해 城底十里는 평지나 구릉도 포함하는 漢城府의 행정구역을 지칭하는 지역이었다.

도성의 四山은 교외나 지방의 산과는 달리 도읍지의 지맥을 보호하고 복돋아 줌으로 인해서 왕조의 번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위로는 소나무나 기타 수목의 식재, 부실하거나 훼손된 땅을 복돋아 주는 행위, 경작의 금지, 가옥의 제한, 농의 설치금지, 화전의 금지, 벌석의 금지, 벌채의 금지, 송충이 잡기 등의 행위를 하였다.

적극적인 행위로서의 식재는 풍수상의 명당에 영향을 끼치는 靑龍 白虎 水口 主山의 來脈등에 걸쳐 시행되었다. 경복궁의 청룡에 해당하는 掌苑署 북쪽고개에서 架閣庫까지 산등성마루안팎 20척의 한계에 여러차례 식재하였고, 掌苑署 北帖에서 中

學까지 가옥, 벌목, 전지개간, 우물 등 산등성이를 침범하여 점유한 곳은 철거하고 果木과 松栢木을 식재하였으며¹⁵⁾, 경복궁의 백호에 해당하는 남대문 밖이다 못을 파서 산맥을 막히게 하였고, 靑坡驛에서 남산까지 산맥의 봉우리와 興天寺¹⁶⁾ 북쪽 봉우리 등處에는 소나무를 심어 가꿔서 산맥을 복돋우려 했다.¹⁷⁾ 안산인 남산에는 소나무와 잣나무를 심었으며¹⁸⁾, 工曹판서 박자청을 漢京에 보내어 각각 隊長, 隊副 5백명씩과 경기의 丁夫 3천명을 거느리고 남산과 太平館¹⁹⁾의 북쪽에 무릇 20일 동안 소나무를 심게 하였다.²⁰⁾ 四山에 걸쳐서 식재를 하기도 하였는데, 兵曹에 전지하여 남산의 인평쪽과 백악산, 무악산, 성관관동, 인왕산 등과 같이 소나무가 희소한 곳에는 잣나무와 도토리 나무를 심게 하였으며,²¹⁾ 경기도와 충청도 감사에게 지시하여 도성 四山의 소나무가 벌레의 피해로 말라 죽기가 쉬우므로 밤나무를 심으려고 하니 밤종자 10여 석을 준 리하여 상림원으로 보내라고 하였다.²²⁾ 또한 廣平大君집의 북쪽고개에서 主山에 이르기까지, 蘆原驛 모퉁이에서 伐兒峴에 이르기까지, 牛場山 및 沙峴에서 靑坡驛의 북쪽고개 산등성마루에 이르기까지는 다 경작을 금하고 잡목을 심어서 산맥을 보호하게 하고, 沈藏庫 모퉁이에서 동대문밖 성밀에 이르기까지 경작을 금지하고 나무를 심게하고, 개천가

(12) 대전회통 工典 雜令 條(사산금표) “성내의 전역과 성외의 玄武主山, 동쪽으로 지정된 梁欄의 외침룡은 釋迦帖 內沙乙園의 남쪽으로부터 狝鐵峴을 거쳐 廣平大君家の 北帖, 先靈祭壇에 이르는 곳 및 普濟院으로부터 서쪽 越邊의 안암동, 狝房洞, 동대문외에 이르는 곳에는 모두 山脊의 내외에 표목을 세우고 서편으로 지정된 梁欄의 외백호는 恭華館뒤 沙峴, 可富署帖, 靑坡 후편에 이르는 곳에는 山脊 내면에 표목을 세운다. 주작안산, 남산외면, 남대문 성외로부터 典牲署뒤를 거쳐서 伐兒峴에 이르는 곳과, 伐兒峴으로부터 동쪽으로 가서 豆毛浦 뒷산과 왕십리 뒷산을 거쳐서 水口에 이르는 곳에는 山脊 내외면에 모두 立標한다.”

(13) 대전회통 刑典 禁制 條(성저십리) “동은 大菩洞, 水驍峴, 牛耳川, 上下伐里, 長位, 松溪橋로부터 中梁浦에 이르기까지 川으로 한정한다. 남은 中梁浦, 筋串橋, 新村, 豆毛浦로부터 용산에 이르기까지 川江으로 한정한다. 북은 大菩洞, 賢賢峰, 저서현, 莪峴山, 延署舊館基, 大棗里로부터 石串峴 西南 합류한 곳에 이르기까지 山脊으로 한정한다. 서는 石串峴, 時威洞, 沙川渡, 城山, 望遠亭으로부터 麻浦에 이르기까지 川江으로 한정한다.”

(14) 허영환(1989) 서울의 고지도, 삼성출판사, p. 12. 참조

(15) 성종/125/12/1/20조. 종로구의 중앙청 앞에서 안국동으로 넘어가는 고개인 北松峴과 중구 소공동, 북창동, 남대문로 2가, 3가에 걸쳐 있는 南松峴(한글學會(1965) 韓國地名總覽 1 (서울편), 한글學會, p. 221, 264.)은 이로 인한 지명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외에도 서울에는 영등포구 松洞, 충로구 松木洞 등(한글學會, 전게서, p. 162, 206.) 소나무가 많음으로 인한 지명이 있다.

(16) 정릉 동쪽 모퉁이에 있던 절. (한글學會, 전게서, p. 73.)

(17) 세종/61/15/7/21조

(18) 태종/21/11/1/3조

(19) 남대문 국민학교 북쪽에 있었음. (한글學會, 전게서, p. 35.)

(20) 태종/21/11/1/7조

(21) 세종/64/16/4/24조

(22) 세종/107/29/8/10조

좌우에 버드나무를 심게하고, 蘆原驛 모퉁이에서 普濟院 서쪽의 큰길에 이르기까지 제방을 쌓고 나무를 심어서 숲을 이루게 하라고 하였다.²³⁾

부실하거나 훼손된 땅을 복돋아 주기 위해 造山과 補土를 행하였다. 造山은 도성 水口 안, 訓練院 동북쪽에 있는데, 하나는 水 남쪽, 하나는 水 북쪽에 있는데 흙을 쌓아 산을 만들어서 地氣를 기르는 것이며, 영종 경진년에 버들을 양쪽 언덕에 심어서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였으며²⁴⁾, 補土는 도성의 주맥인 普賢峰 걸가 산발에 摠戎廳에서 補土處를 설치하고 주관하여 補築하였으며, 도성이 그 위로 지나서 백악 동쪽의 鷹峯²⁵⁾ 아래 後苑主脈 補土處에는 매해 봄가을로 兵曹, 工曹, 漢城府의 堂郎官이 어영대장으로 더불어 看審하였으며²⁶⁾, 지기가

호르는 산맥의 흙을 보토하거나²⁷⁾ 산맥에 박석을 깔았다.²⁸⁾

四山禁標내에서 법을 범하여 경작하는 자는 強占官民山場律²⁹⁾로 논죄하였다.³⁰⁾ 또한 漢城府의 郎官은 四山을 分掌하며 긴요한 處所와 禁忌處를 檢舉³¹⁾하여 표목을 세우는데, 모든 家垵로서 산에 의지하고 있는 곳이면 觀象監으로 하여금 山脊, 山麓을 감시케 하고 臨壓禁忌處³²⁾는 家垵로서 折給해서는 안되며 함부로 이런 곳을 받아 가옥을 건축하는 자는 처벌하며 그 집은 철거하였다.³³⁾ 경성 10리 이내에 入葬하는 자는 盜園陵樹木律³⁴⁾에 의하여 논죄하는데, 기한을 抑勒하여 이장케 하였으며, 능침의 火巢³⁵⁾, 安山の 금표내에 偷葬하는 자는 死刑³⁶⁾을 減하여 定配³⁷⁾하였다.³⁸⁾

(23) 성종/7/원/9/26조

(24) 新增東國輿地勝覽 비교편 동국여지비고 제2권 한성부 금제 산천 조, 을지로 6가 18번지 동쪽 끝으로부터 방산동 4번지 서북쪽 끝까지 청계천 양쪽으로 연한 언덕. 영조 36년(1760)에 인부 20만과 돈 3만 5천 폐미와 쌀 2천 3백 석을 들여서 청계천의 모래를 파내어 이 곳에다 산같이 쌓았는데, 북쪽에 있는 언덕은 광무2년(1898)에 전기회사 차고를 만들기 위하여 대부분은 없애고, 그 서쪽에 조금 남았으며, 남쪽에 있는 언덕은 1917년에 동대문 국민학교를 세울 때 대부분 갖다 쓰고, 그 이듬해 조선 약학교(현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와 그 후 3년 되는 1922년에 경성사범대학(현 서울대 사대 부속고등학교)을 설립할 때 모두 없앴음. (한글학회, 전게서, p. 271.)

(25) 종로구 와룡동, 삼청동, 성북구 성북동 경계에 있는 봉우리. (한글학회, 전게서, p. 22.)

(26) 新增東國輿地勝覽 비교편 동국여지비고 제2권 한성부 금제 산천 조

(27) 성북구 성북동의 補土고개, 성북구 구준봉 뒤편에 있는 잘록한 고개인 보토현 등 (한글학회, 전게서, p. 86, 124.) '보토'라는 지명이 남아 있는 곳들은 보토가 실시되었던 곳이라 생각된다.

(28) 서대문구 갈현동에서 구파발로 넘어가는 고개, 성동구 말죽거리 서쪽에 있는 고개, 종로구 명륜동 2가와 4가에 걸쳐 있는 마을의 고개, 종로구 송현동과 수송동 어름에 있는 고개 등을 박석고개라고 하는데 (한글학회, 전게서, p. 80, 112, 212, 220.), 이는 산맥이 깎이지 않게 하기 위하여 박석을 깔았던 곳이다.

(29) 만약 官有 民有의 山地, 湖中の 山地, 茶園, 갈밭 및 금 은 동 錫鐵의 冶場을 強占한 자는 杖一百 流三千里에 처한다. (法制處(1964) 大明律直解, 法制處, p. 207)

(30) 대전회통 형전 금제 조, 성종/18/3/5/5조 등

(31) 犯罪, 犯則 따위의 지취를 살피며 그 證據를 蒐集하는 것.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譯(1975) 大典會通,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出版部, p. 539.)

(32) 분묘의 後便 가까운 곳에 타인의 분묘 또는 가옥을 建築함을 壓腦라고 하며 이러한 壓腦에 臨한 處所는 禁忌한다.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전게서, p. 632.)

(33) 대전회통 工典 雜令條, 성종/125/12/1/20조 등

(34) 園陵내의 수목을 盜伐한 자는 모두 杖一百 徒三年의 형에 처한다. 만약 타인의 墳墓내의 수목을 盜伐한 자는 杖八十의 형에 처한다. 만약 贓物을 계산하여 보아 그 죄가 本罪보다 중한 자는 각각 盜罪에 一等을 加重한다. (法制處, 전게서, p. 386.)

(35) 火巢는 불의 연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불을 놓아 경계를 삼게 한 곳을 의미한다. (신중동국여지승람 비교편 동국여지비고 제2권 한성부 금제)

(36) 조선시대의 刑律은 大明律에 따랐다. 大明律에는 笞, 杖, 徒, 流, 死刑등 五刑이 있다. 笞刑은 사람이 가벼운 죄를 범한 때에 작은 荊杖으로 치는 것을 말한다. 10번에서 50번까지 5등급이 있고, 每 10번에 刑 한 등이 가감된다. 杖刑은 큰 荊杖으로 치는 것을 말한다. 60번에서 100번까지 5등급이 있고 每 10번에 刑 한 등이 가감된다. 徒刑은 사람이 꽤 중한 죄를 범한 때에, 관에 붙잡아 두고, 소금을 굽히며 쇠를 불리게 하여 온갖 힘들고 괴로운 일을 시키는 것을 말한다. 1년에서 3년에 이르기까지 5등급이 있고, 每杖 10도와 徒役 반년에 刑 한 등이 가감된다. 流刑은 사람이 중한 죄를 범한 때에 차마 死刑까지는 하지 못하고 먼 지방으로 귀양보내어 죽기까지 고향에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伐石은 성안은 四山, 성밖은 동쪽으로 普濟院 盧原驛까지, 남쪽으로 伐兒峴 靑坡驛까지, 서쪽으로 沙峴까지를 모두 산등성이로 한계를 삼아서, 비록 나라에 쓸일이 있더라도 들을 캐지 말게 하여 지맥을 보전하게 하였으며³⁹⁾, 세조때에는 도읍에 있는 주산의 내맥은 함길도의 長白山에서 鐵嶺에 이르고, 강원도 淮陽府의 嵐谷에서 金城縣의 馬峴과 注波峴에 이르고, 狼川의 杭峴에서 경기의 加平縣 華岳山에 이르고, 楊州의 五峯山에서 三角山 普賢峯과 白岳에 이르며, 동쪽으로는 寶燈洞에서 多也院의 鼓巖祭壇에 이르며 서쪽으로는 香林寺에서 綠磻峴의 洗踏巖과 北帖 延昌尉農所에 이른다고 하여 모두 벌석을 금하는 등⁴⁰⁾ 벌석금지의 범위가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지만, 경국대전 공전 재식조와 대전회통 형전 금제조에서는 도성안팎의 산이나 사산금포내에서의 벌석을 금지시키고 있다.

벌목의 금지는 엄하게 다루어졌는데, 특히 四山の 소나무는 비록 고사하거나 충해를 입었을 지라도 그것을 베어쓰지 않고 썩게 두었을 정도로⁴¹⁾ 중요하게 다루었다. 궁궐의 송목을 儻斫하는 자는 년환을 정하지 않고 邊遠에 定配하고 경성 10리 이내에 송목을 犯斫하는 자는 물에 의하여 죄를 정하고 四山禁標내에서 木根, 莎根을 채취한 자와 토석을 굴취한 자는 生松律에 의하여 논죄하였다.⁴²⁾ 또한, 세종때에는 都城外

面의 四山에서 峨嵯山⁴³⁾까지는 모두 나무하고 벌채하는 것을 금하고 있으나, 오직 主山의 來脈인 三角山과 淸涼洞 및 重興洞 이북과 道峯山은 금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나무하고 벌채하는 무리가 날마다 모여서 斫伐하여 점점 민승민승하게 되니, 산밑 근처의 居民으로 산지기를 정하여 벌채를 금하기도 하였다.⁴⁴⁾

② 지방의 산

• 講武場 ; 무예연마를 위한 훈련과 왕의 친입하에 수렵을 실시하는 장소로서 伐木, 경작, 방화를 금지하고 잡목을 심었으나⁴⁵⁾ 후기에는 私獵만 금지하게 된다. 講武場으로는 원래 원유의 제도가 있어 畿內⁴⁶⁾에 일정한 장소를 講武場으로 이용하고자 하였으나 機內에 한가한 땅이 없고 또 노루나 사슴이 많지 않아 여러 곳으로 강무하는 장소를 옮기는 과정에서 새로 講武場이 되는 곳도 있고⁴⁷⁾, 또 기존의 講武場을 철폐하는 경우⁴⁸⁾도 있다. 講武場에도 금표를 세워서 사렵을 금지하고 산지기에 지키게 하였다.⁴⁹⁾

• 官用柴場 ; 柴場, 草場의 私占은 금지되었으며⁵⁰⁾, 관아에서 필요한 柴炭을 공급하기 위해서 각 관아별로 일정량의 산을 지급하여서 그곳에 대해서 독점적으로 땔감을 위해 벌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땔나무를 사용하는 여러 관사에는 물가에 柴場을 지급하였는데, 奉常寺, 尙衣

다. 2,000리에서 3,000리에 이르기까지 3등급이 있고, 매 500리에 한 등이 가감된다. 絞首刑과 斬首刑의 두가지는 형벌중의 극형인 것이다. (法制處, 전제서, p.40.)

(37) 귀양갈 장소를 정하는 것.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院, 전제서, p.537.)

(38) 대전회통 형전 금제 조, 성종/3/원/2/22조

(39) 문종/8/원/3/26조

(40) 세조/31/9/10/22조

(41) 중종/22/10/6/26조

(42) 대전회통 刑典 禁制條, 대전회통 工典 栽植條

(43) 성종/16/3/3/10조에 峨嵯山은 國都를 裨補하는 땅이고 講武場이 되니 경작과 벌채를 금하자고 하였음.

(44) 세종/110/27/11/27조

(45) 대전회통 工典 栽植條

(46) 畿는 京畿를 뜻하여 畿內는 京畿管轄地域內를 의미한다. (韓國精神文化研究院 譯(1976) 經國大典/註釋篇, 高麗院, p.126.)

(47) 태종/4/2/9/19, 태종/25/13/2/19, 태종/31/16/2/14, 태종/32/16/7/5, 세종/7/2/2/22, 세종/44/11/4/9, 세종/53/13/7/25, 세종/122/30/12/초10조 등

(48) 세종/38/9/10/18, 문종/6/원/3/17조 등

(49) 성종/218/19/7/9조

(50) 경국대전 工典 柴場條

院, 司僕寺, 軍器寺, 禮賓寺, 內需司에는 주위 20리, 內資寺, 內贍寺, 司宰監, 繕工監, 昭格署, 典牲署, 司畜署에는 모두 15리, 司圃署에는 5리의 柴場을 지급하였다.⁵¹⁾ 각 능침의 香炭山⁵²⁾은 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곳을 열거 보고하면 왕이 그 중에서 정하여 標木을 세우며, 성균관의 柴場은 楊根의 南面 淵陽里로부터 驪州, 廣州의 地境에 이르는 주위 20리로 정하고 표목을 세워 이를 割給하였다.⁵³⁾ 柴場에서는 벌목과 화전이 금지되었으며, 司饗院 사기소의 柴場은 일정한 곳이 없이 나무가 울창한 곳을 따라 옮기었다.⁵⁴⁾ 柴場에는 세금을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관리가 어려웠다.⁵⁵⁾

• 禁山/封山 ; 범선의 재료인 소나무의 생산, 관에서 필요로 하는 목재의 생산, 군사전력상의 요새화 목적⁵⁶⁾으로 설정하여 벌목, 경작, 화전, 묘지의 설치가 금지되는 산이다. 이러한 금지외에 따로 나무를 심어 가꾸기도 하였다.⁵⁷⁾ 범선의 재료로서의 소나무를 키우기 위한 禁山은 주로 해안가인 沿海州縣의 여러 섬과 각 곳 등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다. 諸道の 봉산의 금송을 犯斫하는 것이나, 放火하거나 실화하는 것, 경작하는 것은 각 룰에 따라 논죄하였다.⁵⁸⁾ 安眠串, 변산은 해운판관이, 海島는 만호가 자세히 살피며, 해마다 봄에 어린 소나무를 栽植하거나 혹은 종자를

넣어서 길렀다.⁵⁹⁾

• 기타 지방의 산 ; 기타 지방의 산도 모두가 公益을 위한 것으로 보아 私占을 억제하려고 하였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나라에서 채벌 등을 금한 산의 관리도 잘 시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는 백성들의 묘지의 분절이나 화전⁶⁰⁾, 일상에 쓰이는 목재나 뿔나무⁶¹⁾벌채로 인해 벌거벗은 경우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소, 말 등을 기르기 위해 제주와 전국에 걸쳐 목장이 설치되었다.

③ 水

도성에서는 풍수상의 圖局의 보호를 위해 수질이나 수맥을 보존하려 하였다. 수질을 보존하기 위해 더러운 물질을 내는 건물을 옮기거나⁶²⁾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게 하지는 의견이 있었으나 실행되지는 않았다.⁶³⁾ 수맥의 보호를 위해서 냇물의 흐름을 끊지 않으려 했으며⁶⁴⁾, 수구에 못을 조영하거나, 조산, 식재⁶⁵⁾를 하였다. 또한 水災의 방지를 위해 성안의 개울과 도랑을 가셔 내었다.⁶⁶⁾

지방의 개천은 농업용수의 기능이 강하다. 개천의 보호방법으로는 저수지, 보도랑, 제방을 축조하는 것⁶⁷⁾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농업용수의 공급과 아울러 물고기를 기르는 이익을 함께 고려하였다.⁶⁸⁾ 또한 산사태의 방지나 물의 원천을

(51) 경국대전 工典 柴場條

(52) 陵의 祭祀에 사용할 香木과 木炭을 얻기 위해서 능 부근에 정한 산을 말함(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院, 전게서, p. 627.)

(53) 대전회통 工典 柴場條

(54) 성종/277/24/5/25조

(55) 정조/23/11/1/무인조

(56) 정조/16/7/10/정해조

(57) 세종/24/6/4/28조 외 다수

(58) 大典會通 刑典 禁制條

(59) 경국대전 工曹 栽植條

(60) 정조/50/22/11/기축조

(61) 순조/5/3/2/갑인조

(62) 문종/12/2/3/3조

(63) 세종/106/26/12/21조, 신증동국여지승람 제3권 한성부 개천 조

(64) 성종/19/3/6/16조

(65) 태종/13/7/4/20조, 문종/12/2/3/3조

(66) 정조/40/18/7/을사 조

(67) 태종/17/9/3/22조, 정조/50/22/11/기축조

(68) 태종/17/9/3/22조

산으로 보아 치수의 한 방편으로 산에 나무를 심거나 벌목을 금지하기도 하였다.⁶⁹⁾ 제언 안팎에 잡목을 많이 심어 터지거나 헐리지 않도록 하였으며, 제언 및 裨補所의 숲안에서 나무를 베고 경작하는 것을 금지하였다.⁷⁰⁾

다. 禽獸

노루나 고라니와 같이 나라의 제사에 긴요한 것은 講武場을 정해 사렵을 금지하였고,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벌과 소나무에 피해를 주는 송충이는 사냥을 하게 하거나⁷¹⁾ 송충이를 구제하는 노력과 함께 이를 災異로 보아 해피제를 지내기도 하였다. 사냥은 제사지내기 위한 동물을 잡기 위해서 실시되었으며, 병사들의 훈련을 병행하기도 하였다.

라. 草木⁷²⁾

소나무는 배의 재료나⁷³⁾ 집을 짓는 재목으로 귀중하게 보호되었다. 기타 초목으로는 관재료로 쓰이는 대나무나 닥나무, 밤나무 등 과일을 제공하는 나무, 뽕나무⁷⁴⁾ 등이 중요하게 다루어져 식재하거나 관리를 하였으며, 소나무가 잘 자라지 못하는 곳에 산림의 녹화를 위해 잡목들을 식재하기도 하였다.⁷⁵⁾ 초목의 보전 방법으로는 금벌, 식재, 경작금지, 화전금지, 송충이잡기 등이 있다. 여러 고을의 옷나무, 뽕나무, 果木의 條數 및 楮田, 莞田, 箭竹이 생산되는 곳은 장적을 작성하여 工曹와 각 도, 읍에 간직하여 두고 재식하여 길렀다.

지방에는 禁山을 정하여 벌목과 방화를 금하며, 해마다 봄에 어린 소나무나 종자를 심었으며, 사산에는 매년 春期和 冬期에는 四山の 분장민으로 하

여금 송목과 잡목을 식수케 하였다. 掌苑署의 각 곳의 果園은 官員이 나누어 맡아 해마다 과목을 심거나 접붙이기를 하며, 그 그루수는 장부에 기록하였다. 掌苑署 소속의 京, 外 果園에는 苑直을 정하여 派遣하여 간수케 하며 관원은 순시하며 이를 감독하며, 江華, 南陽, 開城府는 工曹의 官奴를 파견하여 간수케 하고, 果川, 高陽, 楊州, 富平은 부근의 백성을 정하여 看守를 分擔케 하며 이들에게 대해서는 잡역을 면제하였다. 용산, 한강 등지에 있는 과원을 踏損하는 자는 禁獵例에 따라 논죄하였다. 동, 서잠실 부근의 지역에는 여러 官司로 하여금 해마다 2월안에 어린 뽕나무나 종자를 심게 하되, 植條를 계산하여 부근에 사는 주민에게 맡겨 기르게 하였다. 또한, 蠶室都會 處에는 뽕나무를 심어 기르코⁷⁶⁾, 민가에도 모두 뽕나무를 심게 하였다. 또한 成周의 公桑제도를 따라 궁원에 뽕나무를 식재하였다.⁷⁷⁾ 또한, 전라도 연해의 여러 고을과 제주 3읍의 柑, 橘, 유자나무와 오동나무, 箭竹도 국가에서 관리하였다.

IV.2.2 자연환경보전목적

自然環境保全의 목적은 일차적으로 인간에게 이로움⁷⁸⁾을 주코자 하는데 있었다. 인간은 생존하기 위해서는 자연을 이용할 수 밖에 없으며,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무언가를 남아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自然環境保全의 목적은 남아있는 것과 남아있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남아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용을 할 수 밖에 없으며, 남아있게 하기 위해서는 보호를 할 수 밖에 없다. 性理學에서는 이러한 두축을 천명에의 순응을 통한 생물의 이용과 재해의 방지에 두고 있으며, 풍수에서는 지기의 이용과 지기의 보호에 두고 있다.

(69) 고종/33/32/3/10조

(70) 경국대전 戶典 田宅 條

(71) 성종/198/17/12/2조

(72) 대전회통 工典 栽植 條

(73) 세종/24/6/4/28조 외 다수

(74) 세종/117/29/8/10조, 경국대전 戶典 蠶室 條

(75) 세종/64/16/4/24조

(76) 태종/32/16/8/5조

(77) 태종/17/9/3/1조, 성종/15/3/2/11조

(78) 태조/11/6/4/25조

풍수에서의 裨補와 壓勝은 이러한 행위의 기본적인 틀을 제공하는데 자연환경의 보전과 관련되어서는 비보에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그 대상으로는 산맥을 이루는 제반 자연요소로 수목, 돌, 흙, 물 등이며, 금지된 행위로는 집, 도로, 경작, 묘, 화전 등 인위적인 산의 파괴요소들이었다. 도성의 四山은 지방의 禁山과는 달리 地氣를 잘 이용하고 기존의 地氣를 보호하려는 풍수적 목적이 주된 것이었다.

군사적 목적으로는 배의 재료로서의 소나무의 제공과 요새지에 수목의 보호나 식재를 통한 군사전력상의 목적과 성벽을 둘러싼 해자의 설치와 병행되었던 방어용 수목의 식재 등이 있다. 지방에 설치되었던 禁山, 官用柴場, 講武場 등은 이러한 실용적인 목적에 기인한 것으로, 禁山은 배의 재료로서의 소나무를 기르거나, 관에서 필요로 하는 목재를 기르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었으며, 官用柴場은 땔나무 제공의 목적으로 설정되었으며, 講武場은 나라의 제사에 필요한 제물을 사냥하거나 병사들의 훈련을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었다. 아울러 잡업을 위해서 궁궐, 漢城府, 각 도에 뽕나무밭을 두었으며, 과원이나 굴밭은 과일을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설정되었다. 자연으로부터의 재해는 가뭄 및 홍수 등 기후가 농사에 미치는 영향, 사태, 동물로

부터의 피해가 있는데, 농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주로 물을 관리하기 위해 저수지를 쌓거나 산에 나무를 심는 것으로 나타나며, 또한 祈雨祭나 祈清祭같은 제사로 나타나며, 동물로부터의 피해는 사냥이나 解怪祭, 가지치기로 나타난다.

IV.2.3 자연환경보전방법

가. 대상의 제한

이는 擇時와 擇物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擇時는 사냥이나 불을 놓는 시기를 제한하는 것이며, 擇物은 구역의 설정을 통해 행위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四山, 城底十里, 禁/封山, 講武場, 官用柴場이 있으며, 이러한 구역에는 금표를 설치하여 구역을 표시하였다.

나. 행위의 제한

금지된 행위는 벌목, 화전, 가옥, 묘지, 쓰레기, 경작 및 개간, 방목, 사냥, 벌석, 화재, 통행 등이며, 이를 각각의 자연환경과 관련시켜 보면 <표 2>와 같다.

벌목의 금지는 도성의 산, 禁山, 講武場, 官用柴場, 도성과 지방의 개천등에서 실시되었는데, 도성성저10리에서는 송목에 대해서만 금

<표 2> 금지된 행위

	天	地						禽獸	草木
		山			水				
		도성	지방			도성	지방		
	禁山	講武場	柴場						
벌목금지		●	●	○	○	○	○	○	
벌석금지		●							
화전금지		●	●	○	●			○	
통행금지		○							
무덤금지		●	●	○	●				
가옥금지		●	●	○	●				
개간금지		●	●	○	●				
사렵금지				●			○		
쓰레기금지						○			

● 전반적 금지 ○ 선택적 금지

벌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四山禁標내에서는 모든 나무에 대해서 금벌이 이루어졌다. 지방의 禁山의 경우는 주로 소나무의 벌목을 금하였으며, 講武場과 官用柴場의 경우는 벌목의 금지가 장소나 시간에 따라 선택적으로 실시되었다. 이는 능력과 四山이 풍수상의 도국으로 다루어져서 지기를 배양한다는 측면이 있는데 반해, 禁山의 경우는 목재로서의 소나무를 보호하려는 측면이 주가 되며, 講武場은 그곳에 동물이 서식할 수 있게 하려는 의도에서 벌목을 금지하려 하였으며, 官用柴場은 관아에서 독점적으로 이용하려는 측면으로 그 목적을 구분할 수 있다. 벌석의 금지는 풍수상의 도국에서의 지맥의 보호 목적으로 도성의 산에 대해서만 이루어졌는데, 그 범위는 四山과 도성의 내맥에 이른다. 화전의 금지는 도성의 산, 禁山, 講武場, 官用柴場에서 실시되었다. 화전이나 개간으로 인해 손실되는 수목과 곡물의 생산이라는 상반되는 이익때문에 화전은 기타의 산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산허리위에서만 금지되는

양상을 보이고 이에 대해서 세금을 취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지만, 소나무의 보호나 도국의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이를 엄하게 금하고 있다. 통행의 금지는 도성의 산에서 선택적으로 실시되었는데, 이는 통행 도로가 지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산맥을 보호하려는 의도에서 실시되기도 하였으나 내맥이 흐르다가 끊기는 것처럼 잘룩한 곳에 대해서만 일시적으로 시행되었다.⁷⁹⁾

가장 강력하게 행위의 금지가 이루어진 곳은 도성의 산인데, 벌목, 벌석, 화전, 무덤, 가옥, 경작, 개간이 금지되었으며, 곳에 따라 통행도 금지하였다. 벌석의 금지와 통행의 금지는 풍수적 이유때문이었다. 講武場은 일정한 장소가 없이 짐승이 많은 곳을 일시적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사렵을 금지하였다. 도성의 水는 풍수적인 이유로 명당수에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게 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강력하게 시행되지는 않았다.

<표 3> 조장된 행위

	天	地						禽獸	草木
		山				水			
		도성	지방			도성	지방		
			禁山	講武場	柴場				
식재		●	●	⊙	⊙	⊙	⊙	●	
보토		●							
조산		●							
개천굴착						●			
못의조영						●			
언제							●		
봉작		●	⊙			●	⊙		
제사	●	●	⊙			●	⊙		

● 전반적 조장 ⊙ 선택적 조장

(79) 서대문구 궁말에서 서오릉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벌고개, 또는 罰峴이라고 하는데, 이는 이 고개가 敬讓이 청룡이 되는데, 낮고 약하여 사람이 다니면 더욱 낮아질 염려가 있다하여 통행을 금지하고, 만일 지나는 사람이 있으면 큰 벌을 주었으므로 연유한 지명임. (한글學會, 전계서, p.80.)

다. 보전행위

보전 행위는 직접적인 것과 간접적인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간접적인 행위에 속하는 것은 제사나 봉작이 있으며, 직접적 행위로는 식재, 조산 및 보토, 못의 조영, 개천굴착, 언제의 조성이다(〈표 3〉). 제사, 獄律海濱과 名山大川에 대한 封爵은 天命에 대한 기원을 통해 자연과의 조화를 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벌목의 금지가 이루어진 곳에서는 아울러 식재가 이루어지며, 식재 수준도 벌목을 금지한 수준과 일치한다. 보토는 도성의 주맥이나 후원의 주맥에 대해서 실시되었다. 보토가 맥의 허결한 곳을 메우는 것이라면 산맥에 박석을 까는 행위는 기존의 지기가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조산을 형성하는 것은 풍수상의 도국에서 개천을 굴착하거나 못을 조영하는 행위들과 같이 水와 관련되어서 이루어졌다. 저수지는 농업용수의 확보를 위해서 증, 개축되었다.

가장 폭넓게 나타나는 것은 식재이며, 도성의 四山에서 널리 시행되었다. 이는 자연환경에 있어서 나무를 중요시하였으며, 도성의 四山이나 水가 여타의 것들에 비해 중요하게 여겨졌음을 나타낸다. 講武場이나 官用柴場은 주로 이용을 위한 것으로서 보호를 위한 것들에 비해 금지된 행위나 조장된 행위가 적었다.

IV. 2. 4 자연환경보전 관련 부서

조선시대 자연환경보전 관련부서는 의정부, 漢

城府, 禮曹, 兵曹, 工曹, 그리고 그 각 조의 소속 아문으로 觀象監, 산택사, 修城禁火司, 掌苑署 등이었다. 많은 부서가 도성의 四山과 관련되는데, 이는 四山の 중요성을 반영한다. 지방의 禁山이나 講武場은 兵曹가 주관하였는데, 이는 兵曹가 서반의 최고기관으로서 각 지역에 있는 예하 부서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義政府는 시기에 따라 중앙관서의 최고기관으로서, 육조의 상위기구로서, 육조의 보고사항을 임금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하거나 또는 단순히 왕의 정책자문기관으로서 自然環境保畵의 실무 부서라기 보다는 후술하는 工曹, 禮曹, 兵曹, 漢城府 등의 상위기구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漢城府는 四山에서의 경작금지,⁸⁰⁾ 가옥의 제한⁸¹⁾, 묘의제한⁸²⁾, 벌목⁸³⁾, 벌석 및 개천이나 샘에 대한 감시의 기능과 화재의 방지⁸⁴⁾나 순찰도 하였다. 또한 송충이를 잡거나⁸⁵⁾ 도성내외의 四山에 소나무나 밤나무외에 잡목을 심기도⁸⁶⁾ 하였다. 또한 禁山의 영역을 적간하는⁸⁷⁾ 역할을 하였다.

兵曹는 상기한 漢城府의 기능과 비슷한 송충이 잡기, 벌목자 단속⁸⁸⁾, 벌석금지⁸⁹⁾, 식재⁹⁰⁾ 등이지만 漢城府는 그 관할 구역이 四山이나 城底十里에 한정적인데 반하여 兵曹는 그 범위가 지방에 까지 확장되는바⁹¹⁾ 이는 경도에서 漢城府가 하는 역할을 대신한다고도 볼 수 있다. 兵曹는 서반의 최고 기구로서 지방에서 산을 지키는 만호나 산직의 상위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하였다. 兵曹의 四山監役官⁹²⁾은 漢城府와 함께 禁山을 관리하는 전담기구였다. 또한 兵曹는 講武場

(80) 성종/18/3/5/5조

(81) 성종/125/12/1/20조

(82) 영조/36/9/11/정해 조

(83) 문종/13/2/4/16조, 중종/13/6/5/4조, 효종/1/즉위년/6/12조

(84) 세종/32/8/6/16조

(85) 중종/81/31/4/3조

(86) 성종/125/12/1/20조

(87) 경종/6/2/3/26조, 명종/4/원년/8/23조

(88) 세종/4/윤12/22조

(89) 세조/31/9/10/22조

(90) 세종/64/16/4/24조

(91) 태종/17/9/2/12/조, 세종/121/30/8/27조, 세종/24/6/4/28조 외 다수

(92) 성종/125/12/1/20조

을 새로 지정하거나 관리하는 역할⁹³⁾을 하였다.

工曹는 山澤, 工匠, 土木, 營繕, 屯田, 鹽場, 陶冶에 관한 사무를 맡는⁹⁴⁾ 부서로서 修城禁火司, 繕工監, 掌苑署등의 부서를 屬衙門으로 거느리고 있다. 이는 四山の 벌석금지⁹⁵⁾, 벌목금지⁹⁶⁾, 水口관리⁹⁷⁾, 禁山을 침범한 시설의 적간⁹⁸⁾ 역할을 하였다. 또한 屬司인 산택사는 山澤, 律梁, 원유와 초목의 種植, 柴炭, 水石의 取伐, 堤堰에 관한 일을 담당하였다.⁹⁹⁾ 修城禁火司¹⁰⁰⁾는 도성내외나 성주변의 화재에 대한 순찰이나 벌목에 대한 감시의 기능과 도성안의 개천에 대한 관리 및 감시¹⁰¹⁾의 기능도 담당하였다. 掌苑署는 호조의 사포서와 함께 묘목의 생산이나 과원등 정원의 유지관리적인 성격이 강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禮曹는 명산대천에 제사지내는 일¹⁰²⁾과 사냥하는 법¹⁰³⁾을 담당하였으며, 분묘의 품에 따른 步數의 지정¹⁰⁴⁾ 및 왕능주변의 행위제한¹⁰⁵⁾이나 묘지의 입지가 인호로부터 100보 이내이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屬衙門인 觀象監은 풍수학¹⁰⁶⁾, 지리학 등의 관원을 포함하여 풍수상의 내맥의 보호에 관련된 자문이나 의견개진의 역할을 하였다.

조선시대 지방의 행정체계는 府, 大都護府, 牧, 都護府, 郡, 縣의 위계에 따라 각각 동서반의 외관직이 부임하는데 지방행정의 수반인 觀察使에서부터 縣監에 이르는 관직이 있으며, 지방에 위치하는 禁山관련 실무를 담당하였다. 관찰사는

수령이나 현감에 대한 지휘업무와 중앙부서에 보고하는 기능을 하였고, 수령, 현감 및 만호는 山直에 대한 감독의 역할과 아울러 관찰사에 보고하는 일을 하였을 것이다. 山直은 주민중에 恒産이 있는 자 중에서 선발하여 주어진 임기동안에 벌목 벌석 감시 임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만호는 소나무 금벌의 감시관리자의 역할외에 소나무가 없는 곳에 先軍을 거느리고 소나무의 식재를 감독하기도 하였다. 조선시대 후기에 이르러 토지 분점이 산에까지 확대되는 가운데 마을단위로 松契가 결성되어서 자치적으로 산을 관리하는 조직도 있었다.

V. 결론

본 연구는 조선시대의 자연환경을 性理學의 天命圖로부터 天, 地, 禽獸, 草木으로 보았으며, 또한 풍수지리로부터 地를 山, 水로 구분하여 이를 논의의 뼈대로 삼았다. 性理學의 自然觀은 天命의 경계하는 바가 災異로 나타난다고 보며, 天地에 제사하거나 금수나 초목을 이용하는데 있어 擇時擇物의 원리를 제시하였다. 自然環境保全의 목적은 漢城府의 경우 지맥의 보호 성격이 강하며, 지방의 경우는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자원의 보호와 관리 성격이 강하다. 天은 자연의 원리로서 自然環境保全의 대상이라기 보다는 地, 禽獸, 草木등의 象으로서 파악되며, 刑의 측면에서는 기후현상으로 파악하였다. 도성의 四山은 도읍의

(93) 태종/27/14/2/20조 외 다수

(94) 태종/9/5/3/1조

(95) 문종/8/원/6/26조

(96) 중종/13/6/5/4조

(97) 명종/4/원/8/23조

(98) 성종/125/12/1/20/조

(99) 태종/9/5/3/1조

(100) 세종/32/8/6/19조

(101) 세종/32/8/6/16조

(102) 태종/25/13/6/8조의 다수

(103) 태종/3/2/6/11조

(104) 태종/7/4/3/29조, 태종/35/18/5/21조

(105) 세종/55/14/2/초4조, 세종/80/20/1/24조, 성종/73/7/11/19조, 현종/3/1/11/16조, 현종/5/3/6/12조, 정조/54/24/5경인 조 등

(106) 문종/5/원/1/22조, 문종/10/원/10/22조, 문종/12/2/3/3조 등

地氣와 관련되어져서 보호되었으며, 지방의 산들은 禁山, 講武場, 官用柴場, 牧馬場 등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보존되었다. 도성의 水는 풍수, 재해방지를 위해 보존하였다. 지방의 水는 農業用으로 중요시하여 산에 나무를 심거나 堤防, 저수지 등을 조성하여 보존하였다. 시슴과 고라니는 제사에 필요한 것으로서 講武場을 정해 私獵을 금지하였으며, 호랑이는 피해를 줄이고자 사냥을 장려하였으며, 송충이를 잡았다. 소나무, 뽕나무, 단나무, 果木 등을 많이 식재하고 보호하였다. 自然環境保全의 방법으로는 대상의 제한과 행위의 제한이 있다. 대상의 제한은 시간의 제한인 擇時와 공간이나 個體의 제한인 擇物이 있었다. 행위의 제한으로는 조장된 행위와 금지된 행위가 있는데, 금지된 행위는 伐木, 火田, 가옥, 묘지, 쓰레기, 경작 및 개간, 放牧, 사냥, 伐石, 화재, 통행 등으로 나타나며, 조장된 행위는 제사, 封爵, 식재, 造山 및 보토, 못의 조영, 개천굴착, 언제의 조성 등을 들 수 있다. 도성의 山, 水는 다른 금지구역보다 많은 금지사항이 있었으며, 아울러 많은 행위가 이루어졌다. 자연환경보전부서로는 최고 상위기구로서 의정부, 四山에 대해서는 漢城府, 兵曹, 工曹 등이 관여하고 있으며, 지방의 禁山에 대해서는 兵曹와 각 소속지역의 동서반의 외관직이 관여하고 있으며, 講武場의 관리는 兵曹가 담당하였다. 산의 관리자로서 山直은 실무를 담당하였다.

조선시대의 자연환경에 대한 인식은 天命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일차적으로 삶을 위한 이용의 대상이기도 하였다. 性理學의 自然觀에서 살펴보면 천지만물은 유기적인 관계속에서 파악되지만, 인간은 만물을 이용할 수 있으며, 天命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 당위로서 제시되고 있어 인간에게 모든 것을 책임지우는 면도 있다.

조선시대에는 송충이나 호랑이로 인한 피해, 가뭄이나 홍수 등의 자연재해, 경작지의 개간과 화전으로 인한 산림파괴와 묘지의 분점을 통한 산림파괴, 땔나무가 재목을 구하기 위한 산림파

괴 등 인간에 의한 자연파괴가 있었다.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이를 인간의 행위와 연관시켜 天命의 경계로 파악하였으며, 이에 따라 많은 제사가 행하여졌으며, 산이나 제방에 나무를 심거나 저수지를 축조하는 등의 재해방지의 노력을 하였다. 인간에 의한 자연파괴는 공리지개념의 와해로부터 급속하게 나타난다. 性理學의 擇時擇物을 山林川澤의 公有概念과같이 고려할때 국가와 백성이라는 주체에 따라 擇物이 다르게 나타나며, 국가는 백성들에게 擇物을 제한하였다. 즉, 백성들은 국가에 의해서 제한된 범위내에서 公利하였다. 하지만 궁가, 권세가를 시작으로 하여 산림사업¹⁰⁷⁾이 확산되면서 산림천택의 공유개념은 지켜지지 않게 되며, 이로부터 국가로부터의 제한은 한계를 드러내게 되어 자연환경은 급속히 파괴되어 갔다.

인용 및 참고 문헌

1. 경희대학교부설 전통문화연구소(1991) 「대동여지도 원도 색인」, 백산문화
2.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譯(1975) 「大典會通」,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出版部, pp. 537. 539. 627. 632.
3. 박신환(1987) 「주역의 자연과 인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논문
4. _____(1989) “동양사상과 서양사상의 비교 연구- 동서 자연관의 비교-”, 「철학·종교사상의 제문제(V)」, 한국정신문화연구원
5. 두유운 저, 권중달 역(1984) 「역사학연구방법론」, 일조각
6. 民族文化推進會 譯(1967) 「新增東國輿地勝覽I」, 民文庫
7. 法制處(1964) 「大明律直解」, 法制處, pp. 40. 207. 386.
8. 사회과학원 민족고전연구소(1991) 「이조실록」, 평양: 사회과학원출판사
9. 世宗大王記念事業會 譯(1985) 「世宗實錄地理志」
10. _____ 譯(1985) 「朝鮮王朝實錄」
11. 孫禎睦(1984) 「朝鮮時代都市社會史研究」, 一志社

(107) 중종/22/10/7/13조, 경조/6/2/3/26조, 영조/11/3/5/경지조, 영조/22/5/4/2조 등

12. 심희기(1992) 「한국법사연구」, 영남대출판부
13. 元永煥(1990) 「朝鮮時代 漢城府 研究」, 江原大學校 出版部
14. 劉承藝, 權泰益 譯(1981) 「漢京識略」, 探求堂
15. 유정동(1982) 「동서사상의 만남」, 형설출판사
16. 尹國炳(1978) 「造景史」, 一志社
17. 이만우(1974) 「이조시대 임지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임학회지」, No. 22
18. 李民樹 譯(1992) 「禮記」, 惠園出版社
20. 이승녕(1985) 「한국의 전통적 자연관-한국 자연보호사 서설」, 서울대학교 출판부
21. 이유직(1992) “조선시대 조경제도의 법적 측면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통권 46호
22. 李 燦(1991) 「韓國의 古地圖」, 凡友社
23. 이황, 이이 저, 윤사순, 유정동 역(1992) 「한국의 유학사상」, 삼성출판사
24. 장희익(1992) “조선 성리학의 자연관”, 「과학과 철학」 제2집, 통나무
25. 정대환(1992) 「조선조성리학연구」, 강원대출판부
26. 최영준(1989) “조선시대 한양의 교지역 연구”, 「문화역사지리」 창간호
27. 최영진(1992) “주역의 자연관-계사전을 중심으로”, 윤사순의, 「공자사상의 발견」, 민음사
28. 최창조(1986) “한국의 전통적 자연과 자연관-풍수 지리사상을 중심으로”, 계간경향 「사상과 정책」 봄호, 경향신문사
29. 韓國精神文化研究院 譯(1976) 「經國大典 翻譯篇」, 高麗院
30. _____ 譯(1976) 「經國大典 註釋篇」, 高麗院, p.126.
31. 한글학회(1965) 「韓國地名總覽 1(서울편)」, 한글학회, p. 22. 65. 73. 80. 86. 112. 124. 162. 206. 212. 220. 221. 264. 271.
32. 한동환(1992) 「조선전기 한양금산의 범위와 기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석사논문
33. 허영환(1989) 「서울의 고지도」, 삼성출판사, p.12.
34. Tellenbach, Hubertus and Bin Kimura (1989) “The Japanese Concept of Nature”, in J. Baird and Roger T. Ames (eds.), *Nature in Asian Traditions of Thought: Essays in Environmental Philosoph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35. Odin, Steve(1991) “The Japanese Concept of Nature in Relation to Environmental Ethics and Conservation Aesthetics of Aldo Leopold”, *Environmental Ethics* 13(4)